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584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2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1. 14. 13,900,000원을 I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E과 G 사이, 그리고 G과 I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G과 I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3,900,000원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위 13,900,000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인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13,900,000원에 관한 거래기록사항에 “J”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의 I에 대한 운송료 채권의 액수는 14,222,2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I에 대한 운송료 채권은 2020. 1. 2., 2020. 1. 5.경 발생한 것으로 2020. 1. 14. 운송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칙적으로 제3자도 채무자 대신 급부를 할 수 있고, 피고가 발행한 송장에도 “개인명의로 입금시 당사

연락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등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료가 지급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자의 변제자금 출처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금인 명의가 채무자가 아니라거나 채권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13,900,000원을 I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한 변제로 수령하면서 위 돈이 편취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